

#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계약서



갑:IPS

을 : (주)중앙환경엔지니어링



## 오수처리시설 관리 계약서

오수처리시설 약품공급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함에있어 <u>IPS</u> (이하 "갑"이라한다) 와 <u>(주)중앙환경엔지니어링</u>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목 적 )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을"이 위탁관리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

## 제 2 조 (계약사항)

"을"은 "갑"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임받아 다음 사항을 이행 처리한다.

- 1. "을"은 오수처리시설의 정기점검을 월4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 2. "을"은 시설의 비정상시 또는 필요시 특별 관리활동을 행한다.
- 3. "을"은 정상적인 수질유지활동을 진행하며 수질유지를 위해 필요시 적정의 약품을 투입할 수 있으며, 투입약품의 성분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약 품 명 | 주 성 분                | 투 입 자 |
|-------|----------------------|-------|
| 종균제   | 효소미생물 제거<br>활성 종균 오니 | "ం"   |
| 염소    | 유효염소 70% 이상          | "≘"   |

- 4. "을"은 수질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책임진다.
- 5. "을"은 시설물의 고장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6. "을"은 시설의 고장발견시 "갑"에게 그 결과를 공지하고, "갑"의 위탁을 받아 고장 장비의 정비·교체를 대행한다.
- 7. 오수정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을"이 처리한다. / [회이상/관]
- 8. 오수정화시설 관리인의 선,해임은 "을"에게 위임한다.

#### 제 3 조 ( 책임한계 )

- 1. "을" 은 시설물의 정기점검활동을 진행하며, "갑"은 응급시 비상조치요령을 "을"에게 지도, 교육받고 이를 행한다.
- 2. "을"은 시설물 고장 발견 및 예방점검 결과를 "갑"에게 공지하고 "갑"은 이상상태의 개선과 고장기계의 교체 및 수리등을 행한다.
- 3. "을"은 "갑"의 시설물의 2002. 1. 1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확보할 수없는 중요한 문제점, 결함 등을 파악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갑"은 이의 개선 보완 등을 행한다.

4. "갑"이 시설물의 이상상태 개선과 고장기계의 교체 및 수리 등을 행하였을 시, "을"은 수질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법적 책임을 진다.

## 제 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100 년 8 월 <sup>1</sup> 일부터 100 3년 7 월 <sup>3</sup> 일 까지로 한다.

## 제 5조 (관리수수료)

계약기간까지 2년 사이 전 원년 으로 하며 1개월 단위로 # 220 이 (VAT포함)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 제 6조 (계약서 작성)

본 계약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 해석상 "갑',"을"간에 이견이 있을시 상관습에 따르며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 제 7조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 "을"쌍방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이견이 없을 때는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2002년 8월 1일

"갑"(위탁업체)

주 소: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업체명 (株)아이피에스

대표자:代表理事 李鎔漢

## "을" (기술관리 대행업체)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33-1

회 사 명 : (주)중앙환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이 은 📆